



# 2024<sup>1</sup>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작성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서, 본고는 분석을 위해 2023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확인했다. 한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보고서에 첨부되는 핵심지표 준수 현황의 작성 기준시점을 보고서 제출일 현재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제목을 '2024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분석'으로 정했다.

지난 5월 31일까지, 연결기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총 526개 코스피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공시하였다<sup>2</sup>.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526개사 중 비금융사가 488개사, 금융사가 38개사이며, 코스피 상장기업의 63%에 해당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2019년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가 의무화된 이래, 2022년부터는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기업, 2024년부터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코스닥 상장기업에는 공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포함되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은 바람직한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인 지표 15개의 준수 여부로 구성된 표이다. 의무공시 6년차에 접어든 2024년 보고서에는 작년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반영되어, 핵심지표의 변경과 더불어 보고서의 내용과 형식 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본고는 먼저 2023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핵심지표 준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여 주목할 변화와 시사점을 알아본다.

### 연도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현황

| 구분    | 자율공시 |      | 의무공시(자산총액 기준) |      |         |      |        |      |
|-------|------|------|---------------|------|---------|------|--------|------|
|       |      |      | 2조 원 이상       |      | 1조 원 이상 |      | 5천억 이상 |      |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금융회사* | 39   | 40   | 39            | 40   | 40      | 41   | 39     | 38   |
| 비금융사  | 31   | 55   | 161           | 171  | 175     | 304  | 327    | 488  |
| 전체    | 70   | 95   | 200           | 211  | 215     | 345  | 366    | 526  |

\* 출처: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참고로, 분석 대상은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의무공시 기업으로 연결기준 자산총액 규모별로 2조 원 이상 214개사, 2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 123개사, 1조 원 미만 5천억 원 이상 151개사로 총 488 개사이다. 금융업의 경우 ‘금융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공시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갈음하지만,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에는 핵심지표 준수 현황이 포함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2 그 외에 5개사가 자발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였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홈페이지 ([sgc.samil.com](http://sgc.samil.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최초 제정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 총 5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국내외 지배구조 관련 법제 환경 변화와 시장 참여자의 요구 및 기업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5월에 공시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2023년 10월 3차 및 2024년 1월 4차 개정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최근에도 한국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와 관련하여 추가 개정이 있었다. 이번 보고서에 반영된 3, 4차 개정은 주주권리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핵심지표 변경

| 삭제                       | 신설                     |
|--------------------------|------------------------|
|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현금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고      |
|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 성(性)이 아님 |

\* 이외에도 문구가 변경된 핵심 지표는 다음과 같다.

-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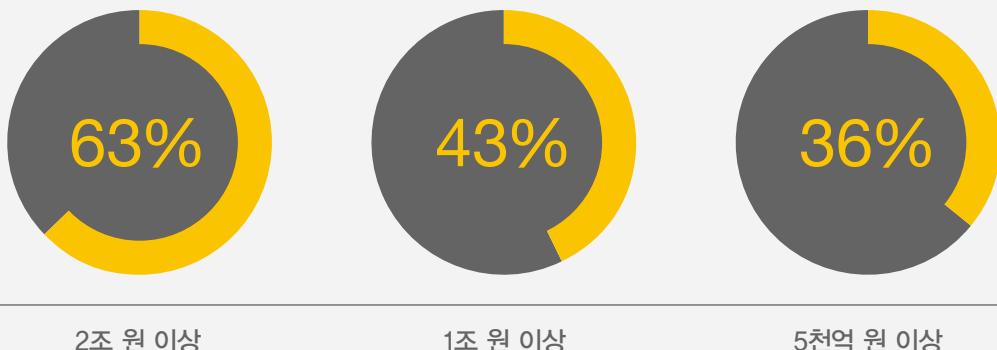
### 세부원칙 변경

| 구분                | 변경사항   | 세부원칙              |
|-------------------|--|-------------------|
|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당 관련 표준정관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 여부</li> <li>• 현금배당 관련 배당액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추가</li> <li>• 배당액 확정일에 배당액 공시일 포함</li> <li>• 주주제안을 통한 배당은 세부원칙 대상에서 제외</li> </ul> | 1-4               |
|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소통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액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내역, 해외투자자 소통을 위한 행사,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확대 등 신설</li> <li>•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 노력 및 그 내용을 공시</li> </ul>        | 1-2<br>1-4<br>2-1 |
| 메자닌 채권 등을 통한 자금조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현황(CB, BW, EB 등 주식 전환가능채권, 조건부 자본증권 등)</li> <li>• 조달과정에서의 주주의견 수렴 정책 공시 의무화</li> </ul>                                      | 2-3               |
| 이사회의 다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뿐 아니라 연령, 경력 등으로 다양성 확대</li> <li>• 이사회 내 동일 성별 구성 여부 및 미준수 시 사유 기술</li> </ul>   | 4-2               |
| 보수정책 및 임원배상책임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 개별평가에 연동한 보수정책 마련 여부</li> <li>• 보수 관련 정책의 공개 여부</li> <li>•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남용 방지 정책 공시</li> </ul>   | 7-1               |
| 부적격임원 선임 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익편취·부당지원, 회계처리기준 위반까지 확대</li> <li>• 1차적인 당국의 판단(기소 및 행정처분)을 기점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까지 공시</li> </ul>                                       | 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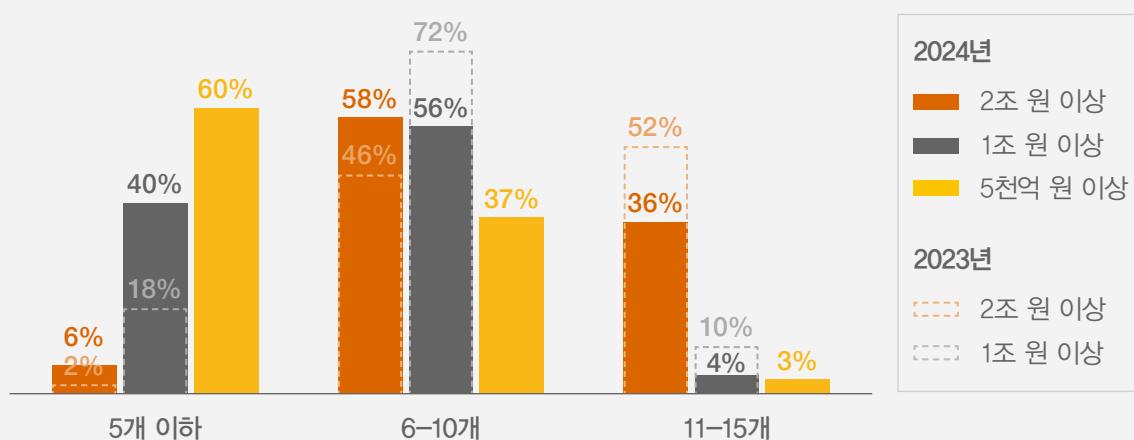
# Summary

## 1 Overview : 전반적 준수 현황

### 규모별 평균 준수율 (전체 평균: 50%)



### 규모별 준수 현황 분포



- 전기까지 준수율이 가장 높았던 지표 2개가 삭제되고<sup>3</sup>, 당기 신규 추가 및 변경된 지표의 준수율이 저조하여 전반적으로 준수율 하락<sup>4</sup>
- 신규 및 변경 지표를 제외하고도 평균적인 준수율 1% 포인트 상승에 머물러 정체
- 전년 대비 준수율 상승한 기업: 13% vs. 준수율 하락한 기업: 60%

3 이하 (2조): 전기 2조 원 이상 준수율, (1조): 전기 2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 준수율

- 6년 초과 장기 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100%(2조), 100%(1조))
-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96%(2조), 80%(1조))

4 (신규)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변경)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2 Key findings

### ① 준수율이 높은 지표 Top 4

| 핵심지표 항목  | 2조 원 이상 | 1조 원 이상 | 5천억 원 이상 |
|--|---------|---------|----------|
| ⑯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100%    | 98%     | 92%      |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98%     | 85%     | 73%      |
| ② 전자투표 실시                                      | 86%     | 77%     | 66%      |
|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88%     | 68%     | 60%      |

### ② 준수율이 낮은 지표 Top 4

| 핵심지표 항목              | 2조 원 이상 | 1조 원 이상 | 5천억 원 이상 |
|----------------------|---------|---------|----------|
| ⑨ 집중투표제 채택           | 5%      | 1%      | 2%       |
|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21%     | 9%      | 5%       |
|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23%     | 15%     | 9%       |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45%     | 19%     | 15%      |

### ③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큰 지표 (2조 원 이상 vs. 1조 원 이상)

| 핵심지표 항목   | 준수율 차이 |
|---|--------|
|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 성(性)이 아님                                | 52%    |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36%    |
| 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36%    |
|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32%    |
| ⑩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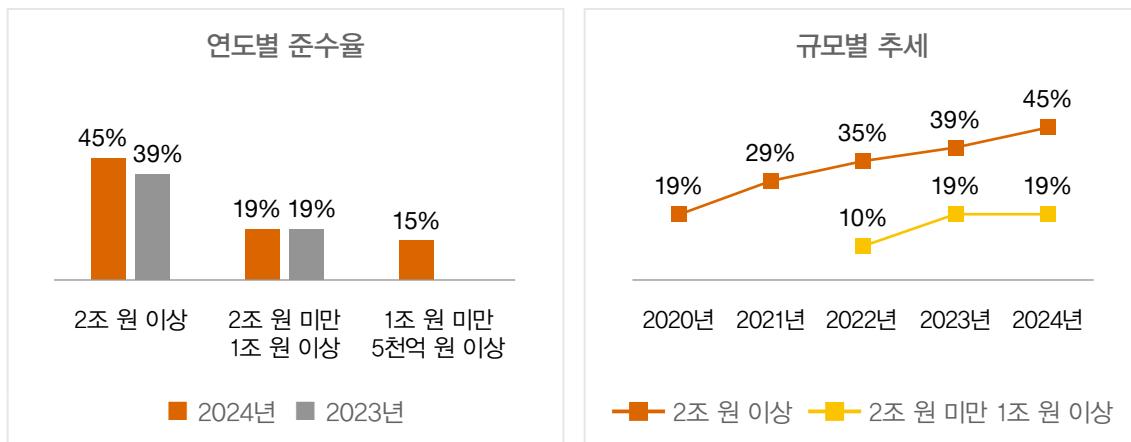
- 이사회 성별 다양성에 대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별도(개별)기준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을 제외하면 준수율이 매우 저조
- 배당정책,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임원 선임 정책 등 명문화된 내부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해야 하는 지표에서 규모별 차이 확인

### ④ 신규 및 변경 지표

| 핵심지표 항목 | 2조 원 이상                  | 1조 원 이상 | 5천억 원 이상 |     |
|---------|--------------------------|---------|----------|-----|
| 신규      |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23%     | 15%      | 9%  |
|         |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 성(性)이 아님 | 79%     | 27%      | 27% |
| 변경      |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88%     | 68%      | 60% |
|         |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21%     | 9%       | 5%  |

- 신규 및 변경 지표를 제외한 11개 지표들의 평균 준수율은 2조 원 이상 67%, 1조 원 이상 48%, 5천억 원 이상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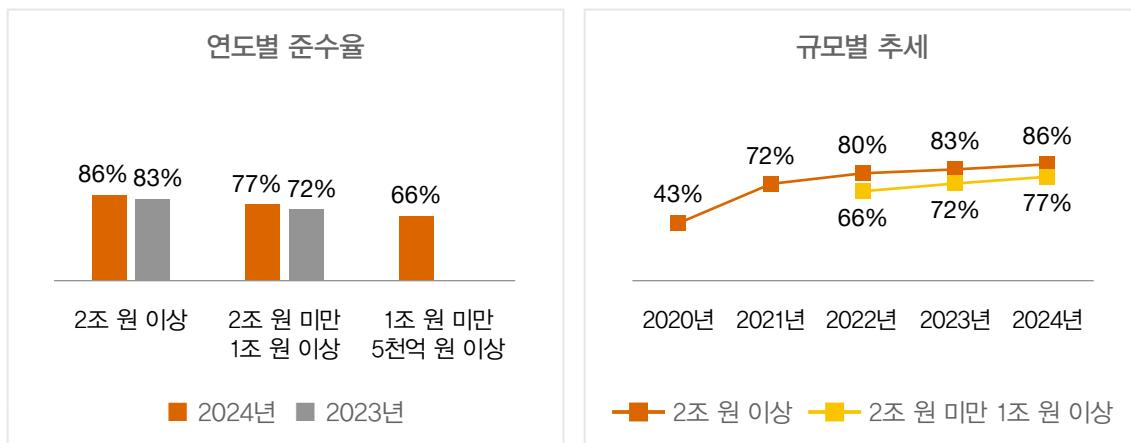
## 1.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2조 원 미만 기업은 준수율이 20%를 밟았고, 2조 원 이상의 기업은 45% 준수율을 보였다. 2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5년 전 19%의 준수율에서 지속적인 개선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주주 권리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절반 이상의 기업은 상법 준수에 머물러 있어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인 미준수 사유로는 연결 결산과 외부감사 일정이 주를 이뤘다.

한편, 상법<sup>5</sup>은 주주총회일의 2주 전 소집통지를 발송할 것을 요구한다. 소집통지에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하지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sup>6</sup>.

## 2.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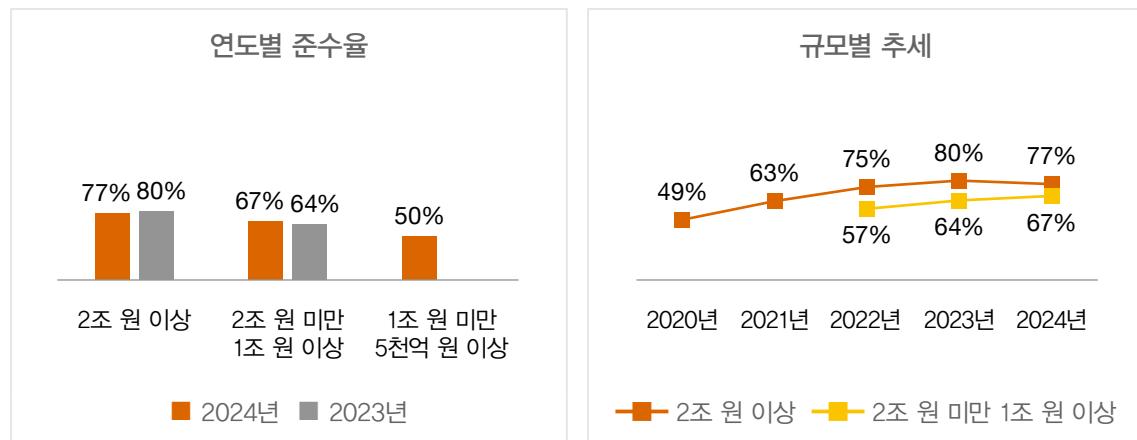
5 상법 제363조 제1항, 제542조의4 제1항

6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58호 서식>

동 지표는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준수율을 보이며,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준수율이 상승 추세를 나타냈다. 참고로, 2월과 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2,480개 상장회사 중 2024년 정기 주총에 전자투표를 도입한 비율은 61.2%로<sup>7</sup> 전기와 수준이 동일했으며<sup>8</sup>,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미준수 사유로는 현재 주주총회 참석률이 높아 전자투표 도입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이 완화되는 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선임 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해야 하지만, 전자투표의 경우 출석한 주주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다.

### 3. 주주총회 집중일 아닌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2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준수율이 소폭 감소, 1조 원 이상 기업은 소폭 증가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sup>9</sup>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 동 세부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아<sup>10</sup> 미준수로 표기했다는 기업도 일부 있었다.

참고로 2023년 12월말 결산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예상집중일이 속한 3월 하순(3/21~3/31) 개최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2024년 94.2%, 2023년 92.3%, 2022년 91.8%, 2021년 82.6%) 전반적으로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1</sup>. 주주총회는 주주와의 가장 직접적인 소통 창구이자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므로 주주총회일 분산을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

7 자본시장연구원, 2024년 주주총회를 통해 살펴본 주주권의 보호 현황과 과제, 2024.04.29. 전자투표 채택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72.3%(586개사),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55.9%(931개사)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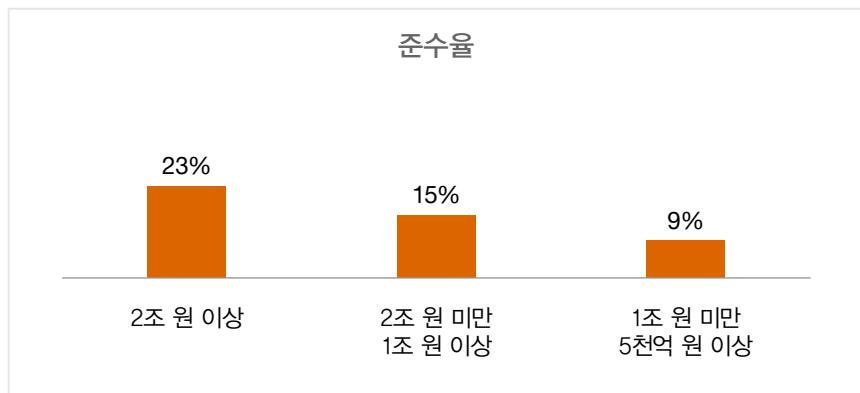
8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3년 정기주주총회 운영 현황 및 주요 특징, 2023.4.26

9 매년 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주총회 집중일을 공표한다.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집중 예상일을 제외한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사전 통보하고, 실제로 그 통보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인센티브(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등)를 받는 반면,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10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 동 세부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기재할 수 있다.

11 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전자주주총회, 2024.03.13

#### 4. (신설)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했다.



올해 신설된 동 지표의 준수율은 모든 규모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작을수록 준수율이 더 낮았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은 결산기말에 배당 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3월에 주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 왔다. 따라서 투자자는 예상 배당금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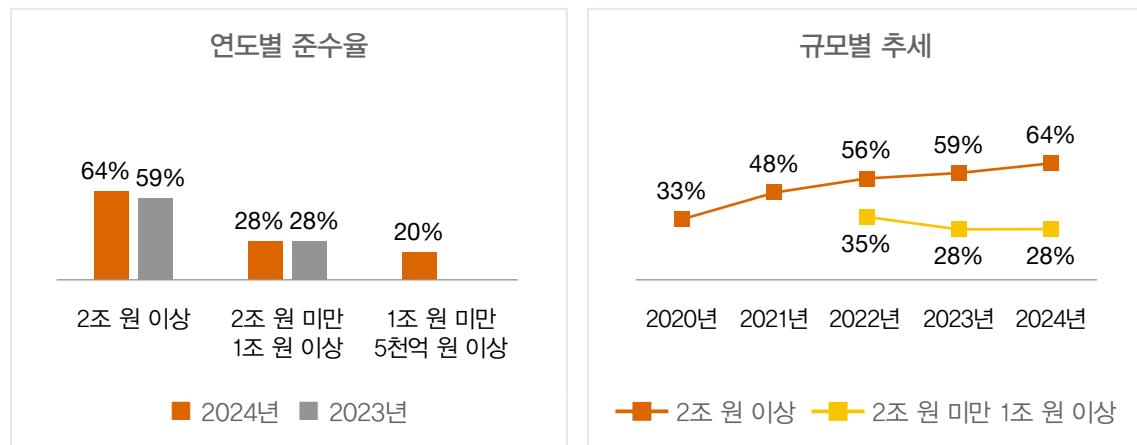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정부 차원의 노력이 최근 진행 중이다<sup>12</sup>. 법무부는 “현행 상법상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으므로, 배당결정이 이루어지는 주총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발표했으며, 상장회사협의회는 이를 반영한 표준정관을 안내하고 있다<sup>13</sup>. 2024년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 등을 개정하기 위한 정관 변경을 진행한 경우가 많아<sup>14</sup> 향후 동 지표의 준수율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 2023.01.31

13 대부분 회사는 정관에 배당기준일 등 배당절차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어, 배당절차 변경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14 2023년 1월 금융위원회의 배당절차 개선안 발표 이후 배당기준일 정비 기업은 총 339사(전체 12월 결산 법인의 42.9%)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유가증권시장 현금배당 법인의 시가배당률, 배당성향 및 주가등락률 현황, 2024.04.17)

## 5.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였다.



2조 원 이상 기업의 준수율은 5년전 33%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64%를 나타낸 반면, 2조 원 미만 기업은 30% 미만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 2조 원 미만 기업들의 미준수 사유로는 당기 영업 적자나 배당가능이익 부재가 주로 제시되었으며, 중장기적 관점의 배당정책<sup>15</sup> 수립에 느끼는 부담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미준수 사유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수립에 대한 모범사례나 상세한 지침이 공유된다면 지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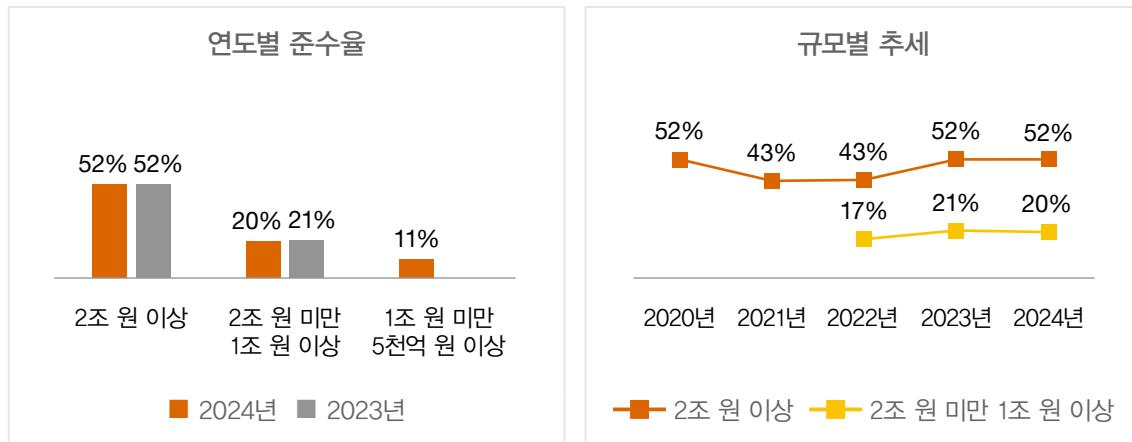
한편,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가치 제고의 주요 수단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의 방식으로 대표되는 주주환원은 주주권의 보호의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의 분석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기업의 2023년 배당총액은 27.5조 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3.3% 증가했으며, 평균 시가배당률은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2.72%를 기록했다<sup>16</sup>.

15 동 지표에서 배당정책은 기업이 배당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실행기준 및 방향을 의미하며, 당기의 배당실시에 관한 사항을 뜻하는 배당실시 계획과는 구분된다. 배당정책과 배당실시 계획의 통지는 공시, 주주 개별통지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IR, 홈페이지 게시 등 주주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다.

16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현금배당 법인의 시가배당률, 배당성향 및 주가등락률 현황, 2024.4.17



## 6.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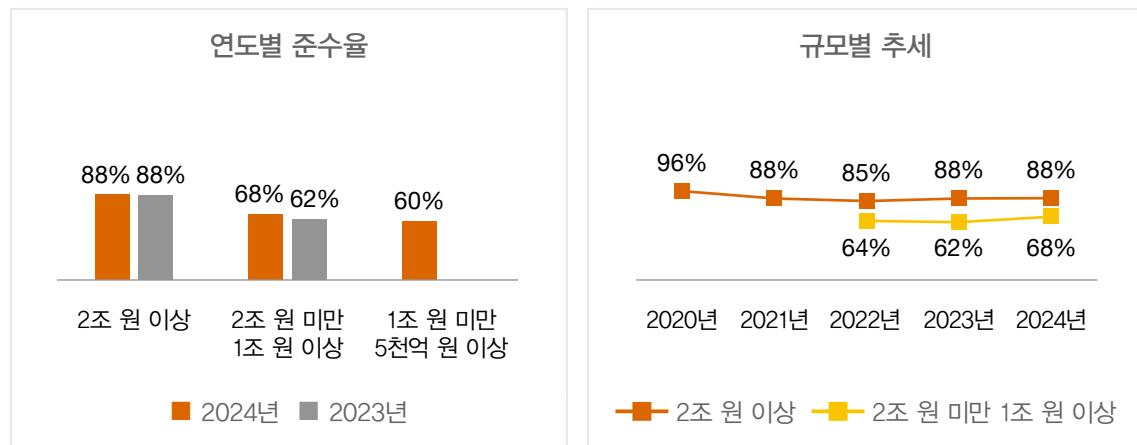


동 지표는 전년 대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2조 원 이상 기업은 50% 대, 1조 원 이상 기업은 20% 대에 머무르고 있다. 의무공시 첫 해인 5천억 원 이상 기업은 11%로 가장 낮았다.

미준수 사유로는 최고 경영자 후보군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비상시 승계 프로세스는 운영 중이나, 명문화된 정책이 없다는 설명이 많았다.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법상 대표이사 선임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집단)의 구성 또는 선정을 위한 기준 등이 명문화되고, 교육, 평가, 정기적 개선보완 등이 실제 이행되어야 한다.

기업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기업의 소유 구조 및 의사결정 구조와 현재 대표이사와의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어려운 문제이며, 실무적으로도 생소하여 각 기업에 적합한 승계정책을 단기간에 수립 및 명문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사회 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최고경영자의 선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사회 주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7. (변경)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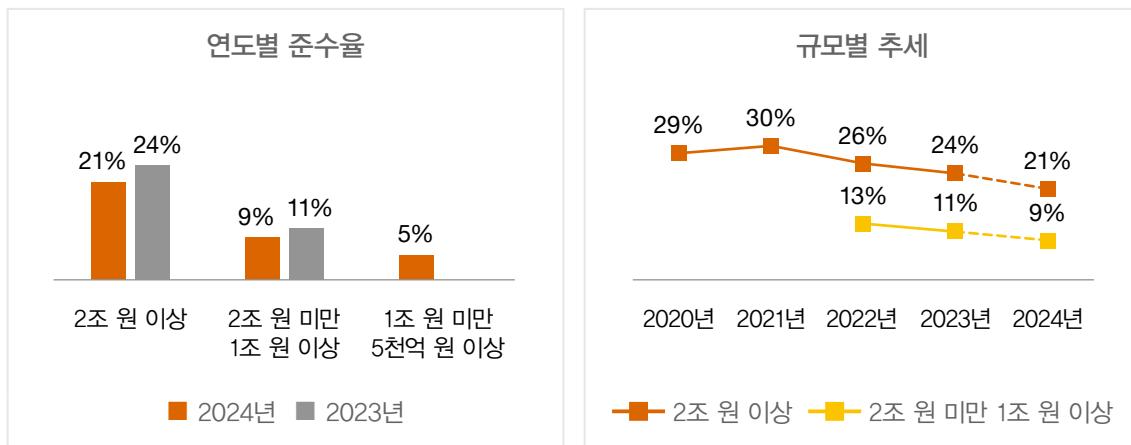


동 지표 역시 기업 규모별 준수율 차이가 크며, 준수율이 수년간 정체되어 있다. 내부통제 범주별로 살펴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 모든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정책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기재했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설계 및 운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준수 기업은 전사적 리스크관리 정책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준법경영 및 공시정보관리 정책 미비가 그 뒤를 이었다<sup>17</sup>.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은 내부통제정책 전반에 관하여 (i) 리스크의 인식, 관리 등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운영 현황, (ii)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 여부 및 운영 현황, (iii) 그 외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이 있는 경우 주요 내용 및 운영 현황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서 위험은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를 포함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을 포함한다. 또한, 전사적 위험 인식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나 관련 조직(위원회 등)을 제시 가능할 때에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17 물론 내부회계관리제도 외에도 위험관리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상장기업 관련 법규들이 있다. 예를 들어, 공시정보관리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2조 제2항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정하는 「상장회사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준법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서 전기말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사회 승인을 득하도록 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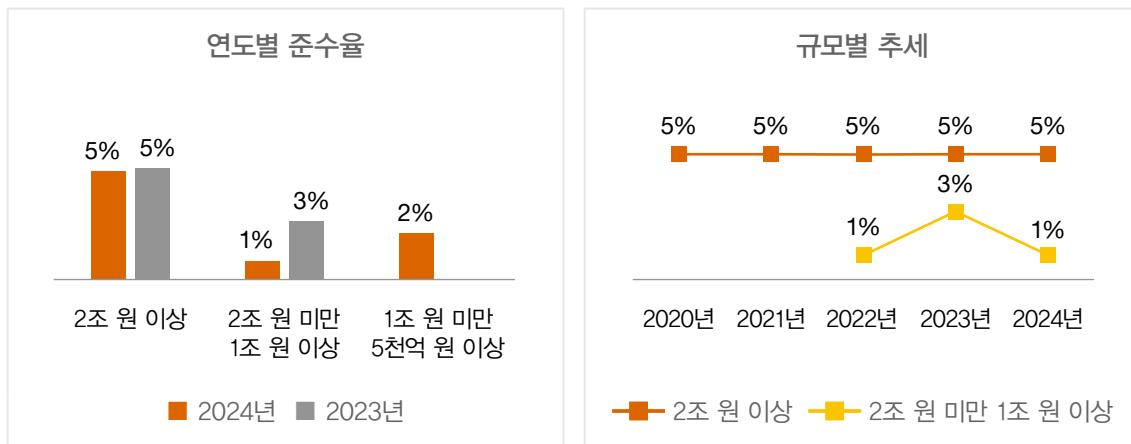
## 8. (변경)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작년까지 동 지표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여부’였으나, 올해부터 보다 명확하게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로 변경되면서 준수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분리되더라도 이사회 의장이 사내이사인 경우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지표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 이사회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이사회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거나, 선임 사외이사를 두어 의장 역할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할 것을 권장한다.

미준수 사유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을 기재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분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기재한 회사도 상당수 있었다.

## 9.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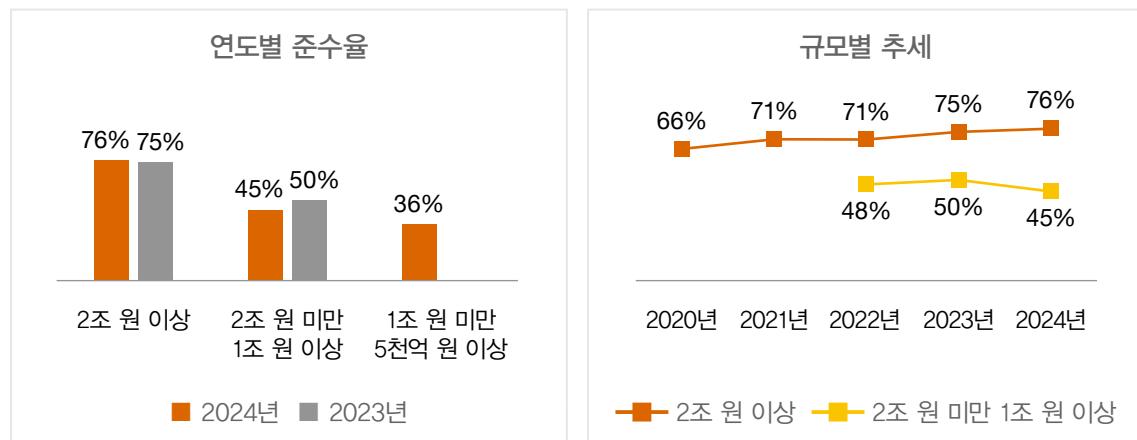


동 지표는 규모와 관계없이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많은 경우, 투기자본 세력 등이 이사회 및 기업 경영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미준수 사유를 제시했다. 집중투표제 대신 소수주주 의견 청취를 비롯한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기재한 회사도 많았다.

집중투표제는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상법에 도입되었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한 제도이기도 하다. 투기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들어 반대하는 기업의 목소리도 높다.

상법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을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sup>18</sup>. 집중투표를 도입할 경우 각 주주는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sup>19</sup>. 그리고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된다<sup>20</sup>.

## 10.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동 지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준수율 차이를 보이며, 2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 기업은 절반에 못 미치는 회사가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천억 원 이상 기업은 36%로 준수율이 가장 낮았다. 2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5% 포인트 감소했는데, 이 중에는 전기에는 준수로 공시했으나, 당기에는 명문화된 정책 불비로 미준수로 기재한 기업들이 존재했다. 미준수 사유로는 임원 선임 시 적격성 검증을 위한 프로세스는 운영 중이나, 명문화된 정책이 없다는 설명이 많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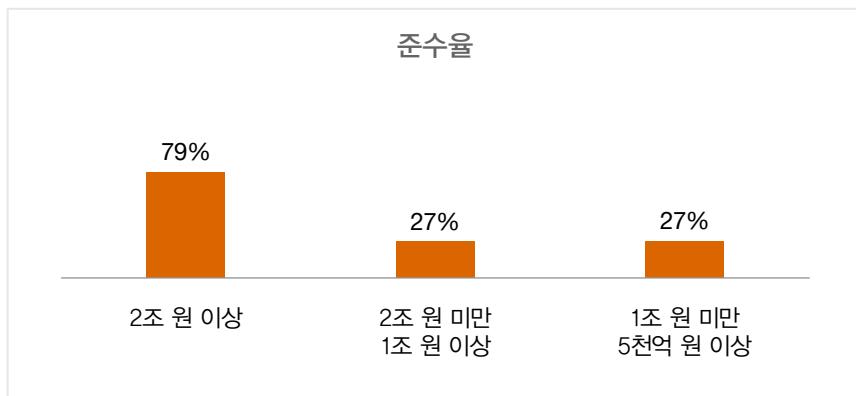
가이드라인은 동 지표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과거에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현황을 설명하도록 한다. 동 지표를 준수한 것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임원의 현재 존재 여부가 아닌 이러한 임원의 선임을 금지하는 명시적 기준 또는 절차의 수립 여부 및 실제 부존재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판단 범위에는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다.

18 상법 제382조의2 제1항

19 상법 제382조의2 제3항

20 상법 제382조의2 제4항

## 11. (신설)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 성(性)이 아니다.



올해 신규로 추가된 동 지표의 준수율은 기업 규모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2020년 개정된 자본시장법<sup>21</sup>의 적용을 받지 않는 2조 원 미만 기업의 준수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2조 원 이상 기업 중 미준수한 경우는 별도(개별) 기준 자산총액이 2조 원 미만으로 자본시장법의 성별특례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가 대부분이었다<sup>22</sup>.

여전히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법 규제 준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sup>23</sup>,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들도 4개사 중 1개사는 여성 이사를 선임하고 있어 자발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한편, 사내이사보다 사외이사로 여성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회사들이 많았다. 이는 기업 내부에서 여성 임원 후보군을 발굴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데, 기업들의 중장기적 개선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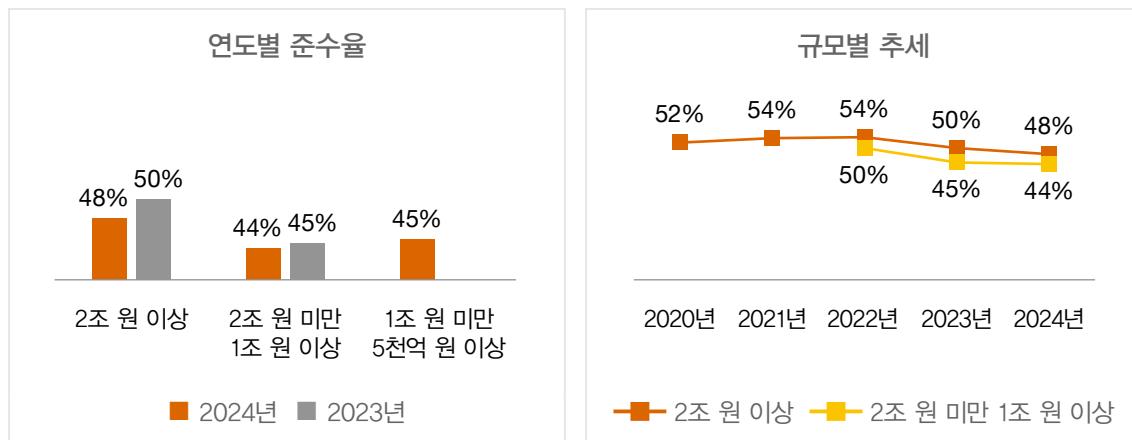
21 2020년,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의 1인 이상 여성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다. 다만, 여성 이사의 미선임에 대한 제재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2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의무화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으로 결정된다.

23 현재 자본시장법상 성별 구성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별도의 제재는 없다. 그러나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 기관들은 이와 관련한 반대 표결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국ESG기준원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 다수 성(性)에 해당하는 모든 이사 후보에 대하여 반대하며, 추후에는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 감사기구

### 12.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sup>24)</sup>를 설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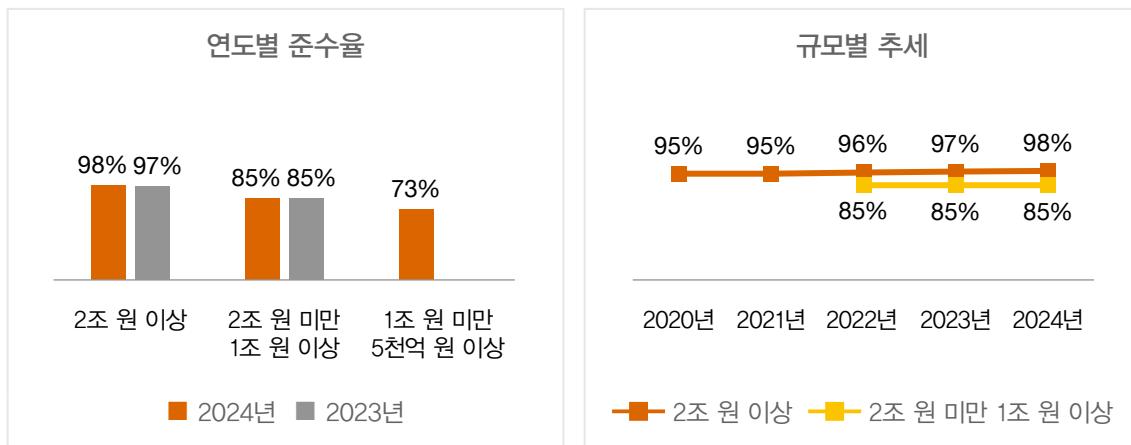


동 지표의 준수율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다. 2023년 10월 가이드라인의 개정 시 감사지원조직의 인사 조치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게 있거나, 최소한 내부감사기구의 동의권 등이 있는 경우에만 동 지표의 준수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으며, 전반적인 준수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미준수 사유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데, 2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대부분 전담 부서는 있으나 감사위원회 산하에 있지 않고 경영지원실 소속 등 조직 구조상 대표이사 산하에 있거나, 인사 관련 의사결정에 감사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절차(승인이나 동의)가 없는 경우였다. 반면, 2조 원 미만 기업의 경우, 전담 부서가 없고 다른 업무 부서(법무, 회계, 전략기획 등)에 소속된 직원 중 지정된 직원이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준수율 개선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4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란, 명칭을 불문하고 관련 법 및 내부 규정상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의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며, 경영진단 등을 수행하는 부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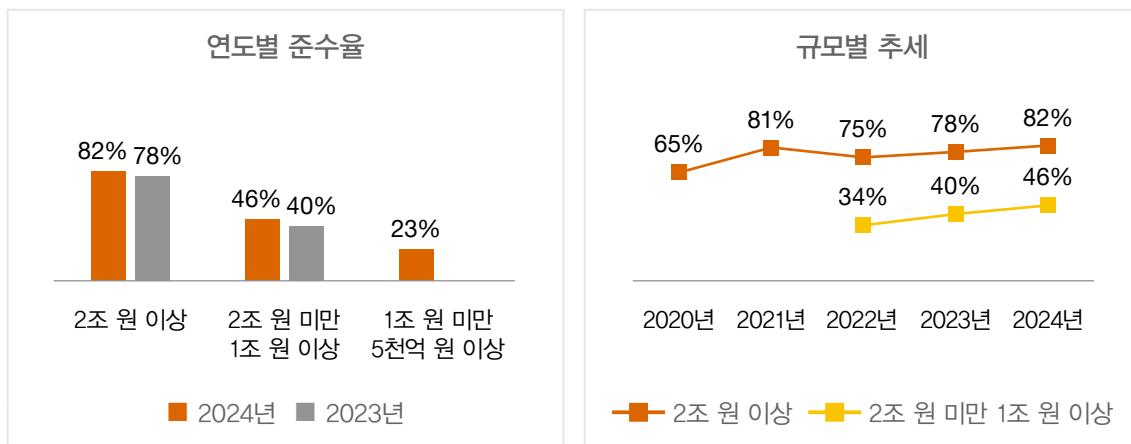
### 13.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존재한다.



최소 1인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두도록 하는 상법 규정으로 인해 2조 원 이상 기업은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지표이다. 다만, 별도(개별) 기준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으로 감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준수로 기재한 회사도 있었다.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성 요건을 두고 있지 않아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 또는 재무 전문성은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수행에 필수적이므로 법규 준수 차원이 아니라 역할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강될 필요가 있다.

### 14.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하였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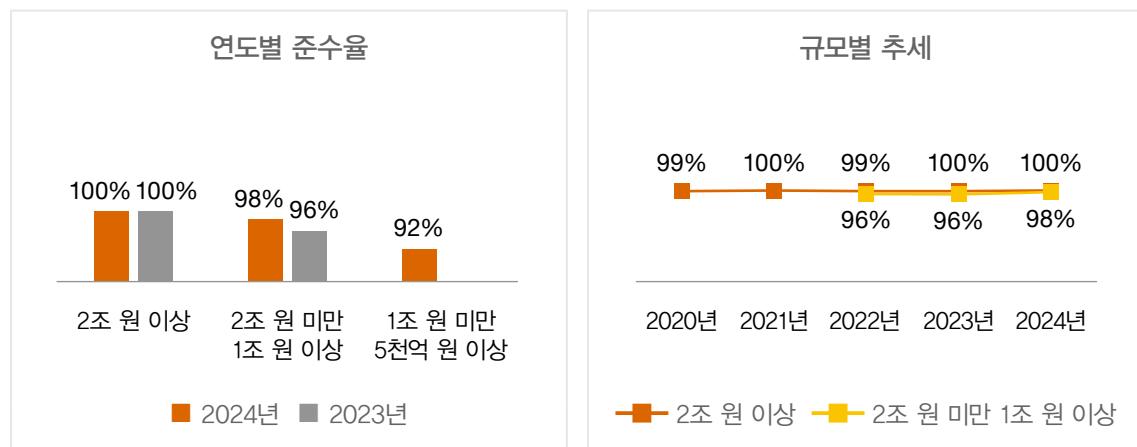
동 지표의 준수율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산 규모별 준수율 차이가 두드러지는 지표이기도 하다. 내부감사기구는 직접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감사인의 업무를 토대로 상법상 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하게 되므로 외부감사인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가

25 '분기별 1회 이상'은 1년에 4번이 아니라 각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을 의미한다. 또한, 동 회의는 대면 또는 화상 회의만 해당되며, 내부감사기구의 감독 대상이 되는 업무를 겸하는 임직원(예를 들어, 재무보고 관련 부서의 임직원)의 참석은 인정될 수 없다.

중요함에도 바람직한 관행이 아직 확실히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미준수 사유는 회의의 비정기적 개최, 서면 보고만 진행, 경영진 참석 하에 진행 등으로 다양했다.

동 지표의 개선은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갖는 회의는 감사기준서상 요구되는 형식적인 감사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문화, 재무보고 이슈, 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솔직하고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다. 실무적으로 공식적인 감사위원회 회의 직후에 이러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기업은 사전에 감사위원회 회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외부감사인과 일정을 논의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15.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2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모든 기업이 준수하였으며, 2조 원 미만 기업의 준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 대상 기업들의 내부감사기구가 모든 경영상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 등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내부규범에 정보 접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은 감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준수는 명문화된 절차 및 정책이 없는 경우였다.

## 맺음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의무공시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6년이 되었다. 올해부터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보고서가 공시되었고, 가이드라인의 개정으로 핵심 지표뿐만 아니라 세부 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활용도가 높아졌다. 더불어 거래소의 지속적인 보고서 점검 등 신뢰성과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sup>26</sup>. 그럼에도 체감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속도는 느린 듯하다.

물론 지표를 미준수 했다고 해서 바로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배구조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장치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선임 사외이사를 두어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 지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우리 기업의 상황을 반영하여 구성한 지표이므로, 대략적인 기업지배구조 현황과 변화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의미하며, 미준수 사유와 향후 계획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업은 핵심 지표를 준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비재무적 목표로 기업지배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핵심 지표를 예로 들고 있다. 이사회가 회사의 규모, 투자자의 요구, 동종업계 동향 등을 종합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 What's next?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5차 개정(2024년 6월)

- 주요 내용: 기타사항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항목 신설, 다음 사항을 공시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 2025년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

26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기한을 미준수하거나 허위공시, 공시항목 오기재·누락 시에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거래소의 정정공시 요구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정공시 요구에 불응 시 벌점 제재가 가능하며, 벌점 수준에 따라 매매 거리정지, 관리종목 지정 등 후속조치가 가능하다. 부실공시 반복 기업은 2025년부터 기업명 및 세부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 별첨. 2024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의무공시]

| 핵심지표  | 전체  | 2조 원 이상 | 2조 원 미만<br>1조 원 이상 | 1조 원 미만<br>5천억 원 이상 |
|---|-----|---------|--------------------|---------------------|
| <b>주주</b>   |     |         |                    |                     |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29% | 45%     | 19%                | 15%                 |
| ② 전자투표 실시   | 78% | 86%     | 77%                | 66%                 |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66% | 77%     | 67%                | 50%                 |
|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17% | 23%     | 15%                | 9%                  |
| 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41% | 64%     | 28%                | 20%                 |
| <b>이사회</b>  |     |         |                    |                     |
|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31% | 52%     | 20%                | 11%                 |
|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75% | 88%     | 68%                | 60%                 |
|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13% | 21%     | 9%                 | 5%                  |
| ⑨ 집중투표제 채택  | 3%  | 5%      | 1%                 | 2%                  |
| ⑩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56% | 76%     | 45%                | 36%                 |
|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 성(性)이 아님                                | 50% | 79%     | 27%                | 27%                 |

| 핵심지표   | 전체         | 2조 원 이상    | 2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 | 1조 원 미만 5천억 원 이상 |
|--|------------|------------|-----------------|------------------|
| <b>감사기구</b>  |            |            |                 |                  |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br>(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46%        | 48%        | 44%             | 45%              |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br>전문가 존재 여부                      | 87%        | 98%        | 85%             | 73%              |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br>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br>회의 개최     | 55%        | 82%        | 46%             | 23%              |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br>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br>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97%        | 100%       | 98%             | 92%              |
| <b>총 준수율</b>   | <b>50%</b> | <b>63%</b> | <b>43%</b>      | <b>36%</b>       |